

의안번호	제753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 
출자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4일

#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75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중앙정부(기획재정부)는 관 주도의 단발적·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「지역활성화 투자펀드」 제도를 도입함
-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『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』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신청하여 전국 제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,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(SPC) 자본금 의무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출자대상 : 단양역 관광단지 주식회사
- 출자총액 : 136억원(지자체 11.5, 철도공단 3, 민간 76.62, 자펀드 44.88)
- 출자금액 : 250,000천원
- 출자규모 : 지자체(광역+기초) 특수목적법인(SPC) **자본금 8% 이상 의무 출자**

① 총 사업비	⇒	② SPC 자본금 (총 사업비 20% 이상)	⇒	③ 도-시군 출자예상액 (자본금 8% 이상 의무 출자)
680억원		136억원		<b>11.5억원 (도 2.5, 단양 9)</b>

- ① 총 사업비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확정 예정(11월 중)
- ② SPC 자본금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이나, HUG 특례보증 활용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총 사업비의 20%로 비율 상향
- ③ 지자체는 보통주 출자가 필수이며, 출자 예상금액은 SPC 전체 자본금의 8.46% 규모임(출자금은 향후 원금 회수 가능)

- 출자시기 : 2025. 1. ~ 2월 중
- 출자기간 : 2025년 ~ 2055년 (30년)

### 3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
- 사업기간 : 2022년 ~ 2027년
- 위치 : 단양군 단양읍 중도리 2-24번지 일원
- 총사업비 : 680억원(SPC 자본금 136, 타인자본 544)

		자본금(136억원)		대출금(544억원)	
		보통주	우선주		
지자체	철도공단	민간컨소시엄	지역활성화 자펀드	지역활성화 자펀드	금융권 대출
11.5억원 (도 2.5, 단양 9)	3억원	76.62억원	44.88억원	91.12억원	452.88억원
1.7%	0.4%	11.3%	(총 조달금액 중) 20%		66.6%

- 사업규모 : 51,842m<sup>2</sup>(약 15,700평)
- 사업주체 : 충청북도, 단양군,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, 국가철도공단, 신흥에이앤디(주) 컨소시엄(6개사) 등
- 사업내용 : 케이블카, 미디어아트터널, 전망대 카페, 유원지 주차장 등

### 4. 출자의 필요성

- 「지역활성화 투자펀드」는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중앙 또는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
-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케이블카, 미디어아트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,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단양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관광객 유입과 지역주민 고용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
- 향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투자펀드 성공 모델로 제시하여 민간 투자 및 지역개발 수요 자극을 통해 도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이 발굴·추진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#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(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)
-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출자방법 및 출자비율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44조의2(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.

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
  2.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

제4조(출자방법 및 출자비율)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,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,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.
-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,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.
-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.